

제 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제 1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소액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합니다.)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2년 09월 28일(수) 오전 9:00

2. 장 소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6 2층

3.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영업보고, 감사보고, 내부회계관리실태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 1호 의안 : 제14기(2021.07.01~2022.06.30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포함)
연결재무제표(이익배당 예정내용 :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) 승인의 건

제 2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

제 3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

제 3-1호 의안 : 감사후보 김광옥 선임의 건

제 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 5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5.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4의 3항에 의거,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 본점, 국민은행 증권대행부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:

「<https://vote.samsungpop.com>」
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: 2022 년 09 월 16 일 ~ 2022 년 09 월 27 일

–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

(단,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)
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

–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·증권
범용 공인인증서, 카카오페이, 휴대전화 인증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
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–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
–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8. 기타사항

–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22년 09월 08일

주식회사 포시에스
대표이사 박미경 (직인생략)

<별 첨>

제 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변경전	변경후	비고
제 5조(발행예정주식 총수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,000,000주로 한다. 제 47조(감사의 선임) 1.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2.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3.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 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 제 49조(감사의 직무와 의무) 6. 제 6항을 청구하였는데도 이사(소집권자)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	제 5조(발행예정주식 총수) 회사가 발행할 <u>주식의 총수는 100,000,000주로 한다.</u> 제 47조(감사의 선임·해임) 1.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·<u>해임</u>한다. 2. 감사의 선임·<u>해임</u>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·<u>해임</u>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3.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u> 4.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<u>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u> 5. 제3항·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<u>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 제 49조(감사의 직무와 의무) 6. 제 <u>5항</u>을 청구하였는데도 이사(소집권자)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	주식발행 총수 증가에 따른 내용개정 상법제368조의4 제1항 반영 및 조항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 조문 정비

제 3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성명	생년 월일	임기	신규선임 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김광옥	1953. 10.16	3년	신규	2006.06~2008.04 (주)농협정보시스템 사장 2010.11~2013.11 IBK시스템 대표이사 2019.03~2021.03 (주)전북엔비텍 대표이사	-	석사	대한 민국

제 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구 분	전기 한도 승인액	금기 한도 승인액
이 사	1,000,000,000원	1,000,000,000원

제 5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구 분	전기 한도 승인액	금기 한도 승인액
감 사	100,000,000원	100,000,000원